

[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목	강동구는 약속을 지켜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예산으로 보장하라! 2024년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및 권리 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보도일자	2023. 5. 10.(수)
담당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010-2060-5786 고나영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팀장 010-2814-1096
분량	총 38매

<본 자료는 <http://www.sadd.or.kr>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약속을 지켜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예산으로 보장하라!”

2024년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및
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input type="checkbox"/>	일시	2023년 5월 12일(금) 오후 3시
<input type="checkbox"/>	장소	강동구청 본관 앞(강동구 성내로 25)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input type="checkbox"/>	공동주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9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2022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정책 및 예산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4. 우리는 수차례의 실무진 면담과 강동구청장 면담, 5월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대행진, 11월 5박 6일 간의 강동구청 점거농성을 통해 2022년 11월 24일,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및 탈시설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등의 정책 이행 약속**을 이뤄냈습니다.

5. 그러나 **2023년 강동구 예산안에는 이행을 약속한 활동지원 월 20시간 추가 2명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려는 강동구청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활동지원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 완화 및 인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2022년 대비 자연증가분 외 증액된 예산이 전무합니다.

6. 이에 우리는 강동구청과 면담을 진행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정책 및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동구가 장애인 권리예산을 추진 계획에 따라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강동구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동구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강동구 장애인 교육권 보장 ▲강동구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7. 우리는 요구합니다.

- ▲ 강동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추진하라!
- ▲ 강동구는 장애인 거주시설폐쇄를 선포하고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하라!
- ▲ 강동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구비 추가 지원을 확대하라!
- ▲ 강동구는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 ▲ 강동구는 모든 구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라!

2023. 5. 10.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2024년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및 권리에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강동구는 약속을 지켜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에산으로 보장하라!

2022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정책 및 예산 수립을 촉구했다. 우리는 수차례의 실무진 면담과 강동구청장 면담, 5월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대행진, 11월 5박 6일 간의 강동구청 점거농성을 통해 2022년 11월 24일,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및 탈시설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등의 정책 이행 약속을 이뤄냈다.

그러나 2023년 강동구 예산안에는 이행을 약속한 활동지원 월 20시간 추가 2명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려는 강동구청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활동지원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 완화 및 인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2022년 대비 자연증가분 외 증액된 예산이 전무하다. 강동구는 장애인 권리정책 및 예산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해야 한다.

강동구에는 모두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반인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이미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강동구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강동구민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강동구에는 30명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이 4개소나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매우 높은 비율(10%)이다. 강동구는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해 온 시설 수용의 역사를 인식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책임감 있게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중증장애인이 탈시설 할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강동구청과 면담을 진행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정책 및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강동구가 장애인 권리에 예산을 추진 계획에 따라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강동구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동구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강동구 장애인 교육권 보장 ▲강동구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 강동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추진하라!
- 강동구는 장애인 거주시설폐쇄를 선포하고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하라!
- 강동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구비 추가 지원을 확대하라!
- 강동구는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 강동구는 모든 구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라!

2023년 5월 12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2024년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및 권리예산 요구안

2023년 5월 12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 2023년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정책 협의 결과에 따른 이행 현황

연번	요구 내용	당초 협의 결과	검토 결과 / 요구 사항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강동구비 지원확대	2023년 추경예산 반영 예정 (2022년) 활동지원 1일 24시간 지원 4명 →(2023년) 5명 확대(50,000천원 증액 예정) 단, 구비 월 20시간 추가 2명분은 2023년 본예산 반영(2023년 총 26명 지원 예정)	- 2023년 활동지원 1일 24시간 1명 지원 확대: 추경 반영 예정 ⇒ 2023년 추경 반영 분 포함해 2024년 본예산 반영 필요 - 구비 월 20시간 추가 2명분: 2023년 본예산 미반영 확인 (자연증가분 외 인상 없음), 추경 반영 예정 ⇒ 2023년 추경 반영 분 포함해 2024년 본예산 반영 필요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2023년 추경예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0% 증액 반영, 이후 인상액 및 인상률에 대해서는 매년 협의하여 결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0% 증액: 2023년 2분기 추경 진행, 3분기 반영 예정 ⇒ 2023년 추경 반영 분 포함해 2024년 본예산 반영 필요
3	강동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신규 추진	타 자치구 진행사항 확인 후 보조를 맞춰 논의 협의	
4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5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 개인별자립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조사 계획 수립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	⇒ 논의 및 검토 현황 요구
6	SH·LH 및 자치구 자체 지원주택 물량 확보 및 예산 지원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점차적으로 논의 예정	
7	그 외 요구안		

□ 2024년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및 권리에산 요구안

구분	세부 요구안
장애인 노동권 보장	1. 「강동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신규 추진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1. 「강동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2.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3. 탈시설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 확대 4. 강동구 장애인 거주시설 완전 폐쇄를 위한 계획 추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확대 2.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4. 중증장애인 재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교육권 보장	1.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2. 「강동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3. 강동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강동구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1.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1. 장애인 노동권 보장

세부 요구안

1. 「강동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신규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인데 반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37%에 그침.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증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며 뇌병변, 발달 장애 유형의 노동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남.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에서 선포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실천 영역임. 최종장애인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통해 우선적으로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생산하고 비장애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이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음.
- 서울시는 2020년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260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2023년 현재 서울에 400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최종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 이행 모니터링, 자조모임, People First, 편의시설 조사, 창작연극, 문화 활동 등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당사자의 기준에 맞추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직무를 수행함.
- 하지만 강동구는 여전히 장애인 인구 18,614명¹⁾(이중 지적장애인 1,449명/자폐성장애인468명/뇌병변장애인 2,010명)의 수요에 비해 일자리가 현저히 부족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노동 영역에 있어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이에 강동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4년 「강동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최종중증장애인 노동자 10명(시간제 주 20시간 일자리)의 인건비과 사업 전담인력 2명²⁾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4조 등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3조, 제4조 등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8조
-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평가체계 연구」 :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현황분석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2021-3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3조, 제7조 등
-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등

1) 서울시 장애인 현황 (장애유형별/동별) 통계 (2022)

○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애인 현황(장애유형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장애인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자치구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

2) '22년부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의 경우 채용한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의 비율로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동일 사업의 타 지역 지원내용과 비교하면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제시하는 최종중증장애인일자리 지원체계는 질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통해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를 1명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사업자는 자부담과 기존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평균 4.3명(최소 2명, 최대 8명)의 인력이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요구사항

1. 「강동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신규 추진

1) 참여자 10명 인건비 지원

○ 요구 예산 : 총 135,064,800원

구분		내역	요구 예산
참여자 인건비	시간제 (주20시간)	10명 × 1,038,960원(월) × 13개월(퇴직금 포함)	135,064,800원

※산출 근거

- 최저시급('23년) : 9,620원
- 월급여 = 최저임금 × (월 근로시간 + 주차수당 + 월차수당)
 - 월 근로시간 : 4시간 × *22일 = 88시간
 - 주차수당 : 4시간 × 4일 = 16시간
 - 월차수당 : 4시간 × 1일 = 4시간

*2023년 토,일을 제외한 평일(공휴일포함) 260일 /12개월 = 21.667일 (소수점 반올림)

2) 사업 전담인력 2명 인건비 지원

○ 요구 예산 : 총 52,275,080원

구분	내역	요구 예산
전담인력 인건비	2명 × 2,010,580원(월) × 13개월(퇴직금 포함)	52,275,080원

※산출 근거

- 월 법정근로시간(209시간)

2.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세부 요구안

1. 「강동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2.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3. 탈시설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 확대
4. 강동구 장애인 거주시설 완전 폐쇄를 위한 계획 추진

1 「강동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 현황 및 필요성

- 2021년 8월, 중앙정부는 국내·외 탈시설 정책권고에 따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장애인 복지의 근간이 되었던 시설화 중심의 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인권 정책으로 전환되었음. 이는 장애인을 보호·격리·수용의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체로 인정하는 당연한 시대적 흐름임.
-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앞선 2009년부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동안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정책 및 예산 확대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보다 안정적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11일, 장애인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 하지만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영유아시설이 탈시설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자립하는 경우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음. 단기거주시설은 실상 장기거주 비율이 높아 거주시설과 대상 구분이 모호함에도 제외되었으며, 영유아시설은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마땅히 탈시설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포함되지 못하였음.
- 또한 탈시설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탈시설 권리를 보

장하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박탈될 우려가 있는 등 많은 한계점이 존재함.

- 따라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구 차원의 더욱 촘촘하고 적극적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함. 강동구는 관내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도해나갈 필요 있음.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 지원에 관한 정책을 강동구 차원에서부터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시설 설치 금지 및 입소 금지,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시설 거주인의 자립 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 실시 및 계획 수립, 주거 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강동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해야 함.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성 역시 명시되어야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2017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 시설은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기존 시설 거주자들이 떠나고 새로운 거주자가 들어와서도 안 됨. 시설에서 확장된 이른바 ‘위성’ 주거 형태, 즉 개인적 생활의 모습(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을 취하고 있지만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거 형태는 설립되어서는 안 됨.
- (2019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자립생활이 시설보호에 우선한다는 자립생활 원칙과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가 탈시설 개념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거주서비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 「강동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 예산 요구안

- 비예산 사업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로서 대한민국은 2008년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소규모 거주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할 것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³⁾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당사자 중심의 권리옹호·동료상담·개인별 자립생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자립 패러다임을 알리고, 장애인의 주체적인 권리 활동을 지원해 왔음.
-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역시 협의회 가입 단체들의 입법 활동의 결실로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보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됨.
- 강동구는 2019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 그러나 일부 용어의 개정 작업 및 구체적인 자립생활 지원 내용이 부족함. 서울시 및 타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하였을 때 주거 지원, 탈시설 지원 등의 개선이 필요함.
- 2022년 6월 21일 열린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제정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2022년 7월 11일 제정)를 기반으로 강동구 자립생활 지원 조례 또한 각 항목의 개정 작업이 필요함.

3)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의 민간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장애인 자립 지원에 필요한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을 수행함.

□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요구사항

-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 제7조(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탈시설 지원 사업’ 명시

□ 예산 요구안

- 비예산 사업

□ 현황 및 필요성

- 지원주택은 장애인 당사자가 주거의 소유권을 갖고, 주거지원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이용하는 공적주거모델로 서울시는 2018년부터 지원주택을 시행 중임.
- 서울시 ‘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2018~2022년)목표 인원은 800명이며, 매년 70호의 지원주택 물량 확보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324명의 장애인이 탈시설 하였으며(이행율 45%불과) 올해 45호정도 물량 확보를 했으며 기존 계획보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임.
- 또한, 지역사회 살다가 시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내 지원체계가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주거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 탈시설은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풍선효과를 방지하여야 함.
- 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SH공사 물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이 일어남. 예를 들어 종로구에 위치한 시설에서 장애인당사자가 탈시설할 경우, 종로구에 살고 있는 재가 장애인이 지원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때, 종로구에 지원주택이 없을시 타자치구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지역을 익히고 관계 및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주택 외 자치구 내 지원주택이 마련되어야 함.
- 자치구별로 균등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각 자치구별 장애인지원주택 서비스를 공급 목표로 주택 공급 계획 마련.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구 운영 ‘청년주택’, ‘공동체 주택’ 등)하여 주택을 확보하고, 강동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주택을 확보해야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장애인복지법」(21'12.21 일부개정) 제27조(주택공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19.09.26 일부개정), 제17조(주거생활 지원) ①시정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 공공, 국민임대주택 등)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요구사항

- SH-LH를 통한 강동구 내 지원주택 10채 물량 확보
- 강동구 자체 지원주택 5채 물량 확보
- 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예산 요구안

구분	요구 예산
운영비	1호당 2,300천원/연 × 15호 = 345,000천원
인건비	2호당 45,600천원/연 × 8호 = 364,800천원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을 배제·격리해온 창살 없는 감옥으로 상징됨. 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소규모화하거나 개선하더라도 지역사회와 고립된 관계 및 공간으로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음.
- 2021년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는 ‘신규 시설 설치금지’의 가이드가 포함되었으나, 최근 서울시는 신규 시설을 설치하고 신규 입소를 독려하는 퇴행을 보이고 있음. 또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는 신규 설치 및 신규 입소 등의 시설 축소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존 시설 운영자가 ‘위성’ 주거 형태로 시설을 확대할 우려가 있음.
- 이는 명백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제19조를 위반함. 협약 제19조를 상세히 설명하는 일반논평 제5호에서는 소규모화된 위성시설 금지, 신규 입소 및 설치 금지를 통해서 풍선효과⁴⁾를 방지하는 등 탈시설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협약에 준하는 자치구 차원의 탈시설 정책 수립 및 이행이 시급함.
- 현재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은 전체 259개소이며, 3,480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음. 이 중 강동구 관할 시설은 우성원(74명), 주몽재활원(42명), 암사재활원(48명), 아름해든집(35명)이 있으며 이들은 서울시 30인 이상 40개 시설 중 4개소에 해당됨.⁵⁾
- 강동구는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하여 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강동구는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 및 입소를 금지하고, 거주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역사회 탈시설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여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야 함.

4)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나오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설로 유입되는 현상.

5)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목록, 접속일자 2023. 5. 3., <https://data.seoul.go.kr/dataList/OA-20425/S/1/datasetView.do>.

□ 관련 근거

-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201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정신 또는 지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폐지할 것.
- (2017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 시설은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기존 시설 거주자들이 떠나고 새로운 거주자가 들어와서도 안 됨. 시설에서 확장된 이른바 ‘위성’ 주거 형태, 즉 개인적 생활의 모습(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을 취하고 있지만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거 형태는 설립되어서는 안 됨.
- (2019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자립생활이 시설보호에 우선한다는 자립생활 원칙과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가 탈시설 개념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 강동구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 및 신규 입소 금지
- 강동구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폐쇄 계획 수립 및 추진
-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을 지역사회 탈시설 지원 예산으로 전환

3.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세부 요구안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확대
2.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4. 중증장애인 재난 지원체계 마련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유급 보조 인력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임. 서울시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기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항목이 포함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됨.
- 중앙정부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5년부터 1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 2018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활동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를 200명으로 확대 지원하기 시작, 그러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인구는 600명으로 여전히 사각지대 장애인이 발생함.
- 또한 지체, 뇌병변 등 신체장애인 중심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인정조사표가 기준으로, 현재의 서비스는 최중증 신체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적, 발달 등 지적·정신장애인들은 실제 24시간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조사표의 한계로 낮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가족과 연계가 없는 탈시설 지적,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지 못함.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가 도입. 예산 확대 없이 활동지원의 지원 폭과 기준을 변경, 중증장애 당사자들의 등급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 또한 종합조사 최대 급여량은 16시간으로 실제 이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대상자는 없음.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족한 급여량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음.
- 해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망하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있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도 개선과 강동구 차원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과 확대는 필수적으로 필요함.
- 이에 우리구에 거주하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및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요구함. 강동구는 2011년 구비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서비스 시간을 상대적으로 적게 판정받을 수 있는 2급 장애인에 대하여 월 50시간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2013년 대상 인원을 늘리면서 20시간으로 축소됨. 2023년 5월 기준 현재 일 24시간 4명, 중증장애인 월 20시간 24명만이 구비 추가 지원을 받고 있음.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월 20시간 구비 추가 지원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함. 당초 지원 계획과 같이 서비스 시간을 월 50시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 24시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탈시설한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서비스종합조사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판정을 받아 국고시간 및 시비추가 지원을 합쳐도 매우 부족하며, 시설 장기 입소로 인해 이미 65세가 넘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자격이 박탈된 장애인에 대해서도 강동구 차원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으로 탈시설 권리를 보장해야 함.
- 탈시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인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아야 함. 이에 강동구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안착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은 4년 이상 지원해야 함.

□ 관련 근거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장애인 자립생활은 지역사회에서 생활전반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의 주체적 수행과정. 이를 위해 장애인이 일상적인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활동지원사 등 사회적 지원 필요함.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2조, 제13조
- 「서울시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요구사항

구분	현행	세부 요구안	예산안
일 24시간	만18세 이상 X1 점수 36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4명	10명	15,570원(2023년도 수가 기준)×250시간×10명×12개월 = 467,100천원
월 20시간	만18세 이상 X1 점수 300점 이상, 발달장애(종합점수 105점 이상) 월 20시간 : 24명	개별적 환경과 필요도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월 50시간 : 40명	15,570원(2023년도 수가 기준)×50시간×40명×12개월 = 373,680천원
탈시설 장애인 추가 지원	-	탈시설 장애인 강동구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 추가 지원 : 50명	15,570원(2023년도 수가 기준)×120시간×50명×12개월 = 1,112,040천원

□ 근거 자료

○ 서울시 자치구별 활동지원 구비 추가 현황

(단위: 천원)

지역	대상 기준	시간	지원액	총 합계
강동구	만18세 이상 X1 점수 300점 이상	20	101,088	338,832
	만18세 이상 X1 점수 360점 이상인 최종증 독거장애인	250	234,000	
	만18세 이상 종합점수 105점 이상 발달장애인	20	3,744	
동대문구	X1 점수 성인 300점, 아동 260점 이상	30	467,100	467,100
중랑구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이용자 중 최중증장애인	150	168,100	456,830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이용자 중 65세이상 최종증장애인	150	28,020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이용자 중 발달장애인	30	112,100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이용자 중 취약계층 장애인	20	130,300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이용자 중 자립생활주택	50	18,310	
강북구	X1 점수가 360점 이상인 성인 독거 및 취약가구 또는 X1(기능 제한) 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성인 발달장애인	30	467,100	467,100
구로구	인정 점수 320점 또는 X1 점수 230점 이상의 발달장애인	30	467,100	467,100
관악구	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	201,787	924,331
	X1 248점 이상인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	647,400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40	70,540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 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	20	4,604	
서초구	장애정도가 심한 최종증(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 중 국비, 시비 추가, 구비 추가 시간의 총합이 740시간이 되도록 부족한 시간을 구비로 보전	69	12,892	515,492
		150	28,026	
		200	37,368	
	성인 발달장애인(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30	437,206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는 2020년 6월, 전국 최초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음. 이는 2020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종합조사 X1 점수 360점 이상인 자에 대해 국비 매칭분 50%를 제외한 나머지(시·구비 제공 시간) 시간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서울시의 이러한 선제적인 시도를 뒤이어, 2020년 12월 2일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활동지원 급여 총량 중 일부를 장기요양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보전급여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시의 지원은 만 65세 이전 지급하던 급여량을 온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350시간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200시간을, 200시간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00시간을 제공하는 등 대폭 삭감하였음.
- 또한 2020년 12월 23일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신청자격 제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2022년 5월 법률 개정 이후 2023년 1월 1일부터 상기의 방식과 동일한 보전급여 조치를 적용. 현재 만 65세 미만이지만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의 장애인들이 종합 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등급을 판정받고 있음. 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 서울시의 추가 지원 기준이 부재하므로 24시간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 이들에게도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 확대 및 기준 마련과 적용을 강력히 요구함.

□ 요구사항

- 서울시 추가시간 감소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활동지원서비스시간 감소에 따른 장애인들의 복지사각지대 발생 상황을 파악.
- 서울시 추가시간 감소 발생상황에 따른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강동구비추가를 실시하여 선제적 제도 확장
- 서울시 추가시간을 사용 중인 만 65세 도래 예정 인원을 파악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감소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 2024년 본예산 반영

□ 관련 근거 :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규사업

- 형식 : 장기요양 + 활동지원 보전급여
- 대상
 - 13년~21년 활동지원 이용하다가 장기요양으로 전환한 사람 중, 장기요양 등급외 제외, 활동지원 60시간 미만 및 시설급여 이용자 제외, 사망자 제외, 장기요양 미이용자 제외 인원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으로 2022년까지 활동지원 수급을 받지 못하다가 202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원받게 된 사람
- 지원시간
 - 보전급여 기준(보전점수 42점 이상을 획득)에 부합한 인원내 대해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구간별 시간에서 장기요양 시간을 차감한 만큼 활동지원 급여로 보전 (국고)
- 복지부 시간만 해당. 지자체 추가시간 보전 필요함.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센터)는 2000년 이후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탈시설 지원, 보장구 지원 등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왔음.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활동 공간 및 지역사회 변화를 만드는 거점으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음.
- 그러나 IL센터의 가치와 역할은 오랜 기간 평가 절하되어 옴. 2023년 강동구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은 약 10억으로 장애인 단체 및 시설보호 육성 예산(2,636,264천원)의 41.6%을 차지하는 데 반해, IL센터 지원은 1억 5천만 원으로 같은 예산의 5.7% 수준에 그침.
- 강동구는 IL센터 운영비로 1개소 당 연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3년 동결). 2022년 정책 협의 결과 강동구청은 센터 운영비 10% 증액을 약속한 바 있음. 하지만 10% 증액된 예산만으로는 안정적인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확보에 여전히 한계가 있음. IL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료 및 관리비 100%, 인건비(1명)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 대폭 확대가 필요함.
- 강동구는 장애인이 강동구에서 지역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변화 및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인정해야 함, 또한 센터에서 더 많은 장애인과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이 지원되어야 함. 이에 불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적인 예산을 보장해야 함.

□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5조 및 제6조

□ 요구안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근인력 인건비(1명) 확보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보장

구분	현행	요구 예산
운영비 지원 확대	2개소: 임대료 + 관리비 + 1인 인건비 = 5,000만 원 × 2개소 = 총 1억	2개소: 임대료 100% + 관리비 100% + 1인 인건비 (4대보험/퇴직적립금 포함) = 7,000만 원 × 2개소 = 총 1억 4천만 원

□ 현황 및 필요성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6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코로나19를 중심으로)」을 배포하며,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할 것을 요청함. 이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침임.
- 그러나 강동구에는 2018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현재 코로나19 재난 상황 4년 차임에도 중증장애인 대상 감염병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음.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드러냄. 위기 대응·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2022년 2월, 강동구민 중증장애인이 PCR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강동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취약한 조건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그리고 위기 상황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지원 단체, 지원자에게 현 상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함.
- 또한 감염병 범유행 상황에서는 관할 자치단체 차원에서 긴급 탈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난 2020년 12월 24일, 송파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주인이 생긴 지 불과 10일 만에 6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바 있음.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특성상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분산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시민사회의 우려를 묵살하는 대응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
- 감염병 방역의 기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임. 강동구는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긴급 분산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긴급 탈시설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강동구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사각지대의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정책이 부재함. 긴급 상황 발생 시 활동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강동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긴급지원 조례」 제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함.

□ 관련 근거

-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코로나19를 중심으로)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요구사항

- 장애인 대상 재난 대응·지원체계 마련

구분	세부 요구안
긴급 돌봄 지원	- 감염병 상황 및 긴급 돌봄 활동지원 인력 양성 및 지원 - 긴급 돌봄 공백 지원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 돌봄 공백에 대한 정보 제공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실행 계획 마련
장애인 거주시설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마련	- 강동구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에 대한 긴급 분산 조치 및 긴급 탈시설 추진

4. 장애인 교육권 보장

세부 요구안

1.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2. 「강동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3. 강동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1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책무 및 시설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배포('21.6.30) 하였고 2022년 7월 이후 전국적으로 적용됨.
- 이에 따라 서울수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적용에 서울수도 매뉴얼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함.

□ 관련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제31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 요구사항

○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등
- 80,000천원(1기관당 40,000천원)

구분	세부 요구안
교육프로그램비	- 미술 활동 등 교육 활동 ① 강사비 200,000원 X 30회 = 6,000,000원
	- 건강 체조 ① 강사비 150,000원 X 60회 = 9,000,000원
	- 만들기 활동 등 ① 강사비 150,000원 X 30회 = 9,000,000원
	- 몸&맘 탐구생활 ① 강사비 300,000원 X 30회 = 9,000,000원
	-교재 및 교구 구매 ① 교재 및 교구 100,000원 X 12개월 = 1,200,000원
	-지역사회이용 ① 프로그램비 300,000원 X 12개월 = 3,000,000원
	- 수용비 2,770,000원 X 10개월 = 2,770,000원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의 증진 필요
 - 학령기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 평생학습을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보장할 마땅한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교육체제 지원이 요구됨.
 -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념과 철학을 공고히 정립하고,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를 장애인의 필수적인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대두
 - 장애인 평생교육이 단순한 ‘교육’에 그치면 그 한계가 분명함. 평생교육과 고용,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합형 평생교육이 필요함.
 - 장애인 정책 흐름이 탈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나오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음. 탈시설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필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장애인 인권과 복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함. 장애인의 평생학습 보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주체적 성장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가치로 담은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함.
 -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서초구, 서대문구, 노원구는 선도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흐름
 - 2021년 4월 20일 유기홍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한 후, 2022년 2월 4일 조해진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이어 발의함.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 위와 같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흐름에 맞춰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역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해 제정될 필요 있음.

□ 관련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 「교육기본법」 제3조
- 「평생교육법」 제5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유엔장애인인권협약」 제24조

□ 요구사항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흐름과 발맞춰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해 강동구 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및 구청장 책무성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지원 기준 마련 및 명시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업 통합적 평생교육 보장 및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위하여 국가는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
- 새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 속 어려움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22. 9. 8)를 발표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대폭 확대를 발표함.
 - 지원대상 확대(15→53개) 및 지원기간 연장(1→3년)

1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 대폭 확대(15→53개)

-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지원대상 확대(15→53개) 및 지원기간 연장(1→3년)
 - *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장애인 자립지원 교육 등) 개발 및 운영 지원

- 그러나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2개의 자치구(서대문구, 은평구)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매우 저조함.
 -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63개 기초지자체 지정(계속지원 32개, 신규지원 31개) .
 - 서울시는 서대문구, 은평구 2개 자치구만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

구분(광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수	최초 지정 연도		
		2020	2021	2022
서울특별시	2	-	서대문구(신규)	은평구(신규) 서대문구(계속)

□ 관련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15조의2

<평생교육법>

-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요구사항

○ 강동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 △중증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체제 마련 △학습에서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강화

5. 강동구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세부 요구안

1.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현황 및 필요성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자치구 인권 기본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실현하는 토대로서 누구나 인권을 누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됨.
-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부터 인권 조례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실생활에서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주요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 지자체에 인권 조례 제정 및 확대를 권고함.
- 2016년에는 「서울시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음. 2023년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인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23곳(강동구, 용산구 제외)이 인권 조례를 제정함. 강동구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강동구민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함.

□ 관련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등
- 「서울시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 지방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 및 인권의 지역화 강조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할 것과 이미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는 현행 조례가 표준안에 비추어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필요시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

요구사항

-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예산 요구안

- 비예산 사업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강 동 구



수신자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
(경유)

제목 **2023년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정책에 대한 협의 결과 회신**

1.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2022-055(2022. 11. 18.)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지난 2022.11.21.(월) 개최된 '장애인 권리에산 요구 관련 실무자 간담회' 시 논의된 협의안에 대한 우리 구 답변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향후 사업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결과에 대한 우리 구 답변사항

연번	요구 내용	우리 구 답변사항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강동구비 지원 확대	2023년 추경예산 반영 예정 (2022년) 활동지원 1일 24시간 지원 4명 → (2023년) 5명 확대(50,000천원 증액 예정) 단, 구비 월20시간 추가 2명분은 2023년 본예산 반영 (2023년 총26명 지원 예정)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2023년 추경예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0% 증액 반영, 이후 인상액 및 인상률에 대해서는 매년 협의하여 결정
3	강동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신규 추진	타 자치구 진행사항 확인 후 보조를 맞춰 논의 협의
4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5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조사 계획 수립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
6	SH·NH 및 자치구 자체 지원 주택 물량 확보 및 예산 지원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점차적으로 논의 예정
7	그 외 요구안	

나. 아울러 구청장님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구청장 업무 일정(11~12월) 상 면담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동구 **청장**

주무관 전재현 장애인복지담당주사 박성련 장애인복지과장 주희범 복지가족국장 11/24 이상용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과-31308 (2022.11.24.) 접수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 / http://www.gangdong.go.kr
전화 (02)3425-5696 /전송 (02)3425-8615 / jeonjh@gangdong.go.kr / 비공개(5)